

1. 개정이유

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공상·순직공무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집에 ‘국가유공자의 집’이라는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며, 명패가 분실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명패 부착 대상 확대(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)

공상공무원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

나.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(제6조)

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00.00.~ 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제11호”를 “제11호·제14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13호”를 “제13호·제15호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”을 “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수선, 교체 또는 추가지급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부착 대상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(이하 “명패”라 한다) 를 부착한다.	제2조(부착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	2. ----- -----
가.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· 제5호 · 제11호 · 제16호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	가. ----- -----제11호 · 제14호 ----- -----
나.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· 제6호부터 제9호까지 · 제12호 · 제13호 · 제17호 ·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	나. ----- ----- -----제13호 · 제15호 · ----- -----
다. · 라. (생 략)	다. · 라. (현행과 같음)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) 국 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된 경 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6조(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) -- -----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수선, 교체 또는 추 가지급 등 -----.